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. 10. 23 선고 2018가단2259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9. 9. 25.

판결 선고2019. 10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밀양시 G 답 612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82. 4. 6. 접수 제33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C, D, E, F은 밀양시 G 답 612m² 중 각 1/4지분에 관하여 1982. 4. 6. 접수 제33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
 - 가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피고2 내지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 - 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규도

별지